

서울고등법원 2021. 8. 26 선고 2021나200318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1. 8. 26 선고 2021나2003180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가합2146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담당변호사 박경홍)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흥인(담당변호사 장준태)

변론 종결2021. 7. 15.

판결 선고2021. 8. 26.

제1심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가합2146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심 주장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더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면 '1. 기초사실 가.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C 토지상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D상가 H동(이하 '이 사건 D상가'라 한다)을 헐고 그 자리에 지하 7층, 지상 20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지하 1층 ~ 지상 4층) 및 오피스텔 954실(지상 5 ~ 20층)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이다.』

○ 제1심 판결 제4면 '②항'과 5면 '③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② 이 사건 D상가의 재건축사업에는 원고 외에도 다른 경쟁업체들이 사업 추진을 시도하고 있었고, 피고의 이 사건 2차 계약 해지 통지 후 다른 경쟁업체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대지 면적 1평당 7,500만 원의 매매대금을 제안하기도 하는 등의 상황에서 원고로서는 상가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대금이 점차 상승될 것임을 충분히 알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3차 계약은 이 사건 1, 2차 계약과 마찬가지로 모두 원고와 피고의 협상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는 피고의 경우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한 상가도 있는 점[기존 상가를 헐고 그 자리에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 내용을 고려하면 매매 목적물 중 대지 면적이 중요 기준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 사건 3차 계약의 대지 면적 1평당 매매대금은 약 7,124만 원(매매대금 16억 7,500만 원 ÷ 23.51평)인데, 원고는 다른 상가 소유자와 대지 면적 1평당 매매대금을 약 1억 원으로 정하기도 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2020. 6. 30.자 준비서면)』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남성민

판사원종찬

판사이혜란